

2024년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공고

우수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「2024년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7일

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1. 사업 목적

- 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우수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업무 노하우 및 숙련기술 전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지속 성장 도모

2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지원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으로
상시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인 사업장
* 품질관리분야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인 사업장

※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

근로복지공단(www.comwel.or.kr) - 대표 홈페이지 - 국민소통 - 민원/조회 -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- 고용 선택 -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- 관할지역 선택 - 가입 조회하기 - 고용 상시 인원수 확인

※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용 상시근로자 수 확인

- (지원내용) 업무 노하우 및 숙련기술 전수

3. 지원 개요

- (신청서 접수 기간) 2024. 2. 27(화) 10:00 ~ 3. 7(목) 18:00 [10일간]
- (접수방법) 마이스터넷(<https://meister.hrdkorea.or.kr>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(지원규모) 1,000개 기업(예정)

○ (지원분야 및 지원한도)

지원분야	지원한도
기계, 재료, 화학, 섬유·의복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식품가공, 건설, 디자인·문화콘텐츠, 이·미용, 음식서비스, 공예, 산업안전 (13개 분야)	분야별 100시간 이내
품질관리 (1개분야)	30시간 이내

-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연간 지원 한도 : 300시간

※ 경영·회계·사무, HRD는 품질관리분야로 지원

※ [별지1] `지원분야별 세부직종` 참조

○ (지원시간) 평일 09:00~21:00 / 1일 최대 5시간까지 지원 가능

※ 법정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, 임시공휴일, 토요일, 근로자의날 지원 불가
(중식 및 석식 시간 지원시간에서 제외)

○ (지원실시 기간) 2024. 4. 1(월) ~ 2024. 9. 30(월)

○ (지원비용) 무료

※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활용에 따른 수당 및 여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

4. 산업분류별 지원 여부 및 지원제외

○ (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별 지원 여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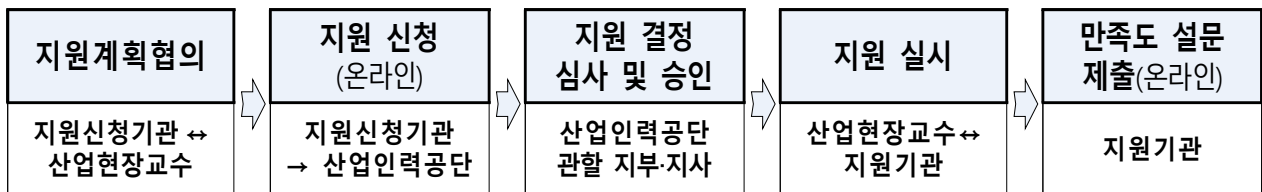
산업분류	지원여부
1. 제조업 (단,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제외)	가능
2. 광업	가능
3. 건설업	가능
4. 운수 및 창고업	가능
5. 정보통신업	가능
6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(단, 부동산 이외 임대업 제외)	불가
7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가능
8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가능
9. 도매 및 소매업	가능
10. 숙박 및 음식점업	가능
11. 금융 및 보험업	불가
12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가능
13. 그 밖의 업종	가능

○ (지원 제외)

-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
-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중 지원불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- 고용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미만인 기업 또는 100인 초과 기업
(품질관리분야는 5인 미만인 기업 또는 100인 초과 기업)

- 지원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
- 최근 2년('22~'23년) 연속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
- '23년 지원사업 부적정 운영으로 경고 2회 이상 받은 기업
- 산업현장교수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에 준하는 기관

5. 지원 절차



○ **(지원계획 협의)** 지원신청기관은 지원신청서 접수 전에 지원 희망분야에 적합한 산업현장교수를 선택하여 지원요청사항 및 지원계획 사전 협의

- 희망 산업현장교수 선정 시에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산업현장교수 우선 선택
 - ※ 필요 시 소재지(또는 지원장소) 관할 공단 지부·지사로 지원신청분야에 적합한 산업현장교수 추천 요청
[별지2] '지부·지사별 문의처 및 관할구역' 참조
- 산업현장교수는 지원신청기관의 지원 요청사항 확인 후 직무수행계획 수립
 - ※ 산업현장교수는 위촉된 분야 및 직종으로 1일 1개 기관만 지원 가능

○ **(지원 신청)** 지원신청기관이 마이스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

신청 절차

- ① 마이스터넷 홈페이지(<https://meister.hrdkorea.or.kr>) 접속
- ② 단체회원 로그인 (**처음 신청하는 기관은 단체회원 가입 및 공단 승인 후 로그인**)
- ③ 상단 '산업현장교수' - '산업현장교수 지원 - 신청하기' 클릭
- ④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 후 신청 버튼 클릭하여 등록
※ 신청 버튼 클릭 후 접수 마감일시 이전까지 상시 수정 가능

-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마이스터넷에 직접 입력
- '관할소속기관'은 지원장소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·지사 선택 [별지2] 참조
-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지원받을 장소가 다른 경우는 [별지3] '지원 장소 확인서' 를 작성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소재지 관할 지부·지사 선택
 - ※ 지원장소는 지원신청기관 사업장 내 장소만 가능 (본사, 지사(공장 등) 내 장소)

- 첨부서류는 반드시 해당 항목에 맞게 첨부

※ 필수서류 누락, 직인·날인 누락 등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

구 분	첨 부 서 류
필수서류	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(접수기간내 발행분) - 직무수행계획서 [별지4] 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[별지5]
선택서류	- 지원 장소 확인서 [별지3] ※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전수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제출

○ (지원결정 심사 및 승인) 공단 관할 지부·지사에서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, 지원 적격기관 결정 및 지원기관별 지원시간 조정 후 최종 승인

- (지원시간 조정) 지원 적격기관이 많아 가용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신청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시간 조정

- (신청서 수정제출) 지원시간 조정 사유로 지원신청서 반려 시 지원기관은 조정시간 확인 후 지원신청서의 총 지원시간과 직무수행계획서 수정제출

- (신청 결과 확인) 2024. 3. 27(수) 이후 마이스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

※ 지부·지사별 지원신청서 심사일정에 따라 신청결과 확인 일자가 다를 수 있음

○ (지원실시) 최종 승인된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원활동 실시

○ (만족도 설문 제출) 지원기관은 지원 종료 후 마이스터넷을 통해 지원사업 고객만족도 설문 작성 제출(온라인)

※ 마이스터넷 기능 구축 이후(상반기 예정) 만족도 설문 참여 가능

○ (최종성과보고서 제출) 산업현장교수는 지원 종료 후 최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 직인(도장) 날인 후 마이스터넷으로 제출

6. 지원기관 선정(승인) 후 준수사항

○ (직무수행계획서 준수) 지원기관과 산업현장교수는 최종 승인된 직무수행계획서의 지원일시, 지원장소, 지원내용 등을 준수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사업 수행

○ (지원변경 신청 절차 준수) 지원 기간 중 불가피하게 지원일시, 지원장소, 지원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, 마이스터넷으로 사전 변경신청하고 관할 지부·지사 승인 후 지원 실시

- 지원장소는 지부·지사 관할구역 내에서만 변경 가능
- 변경신청 기한

구분	제출 기한
변경하고자 하는 일자가 직무수행 계획서의 지원일자 보다 빠른 경우	<u>지원변경 하고자 하는 일자의 3일전까지 변경신청</u>
변경하고자 하는 일자가 직무수행 계획서의 지원일자 보다 늦을 경우	<u>직무수행계획서의 지원일자 3일전까지 변경신청</u>

※ 천재지변, 지원기관의 요청, 산업현장교수의 질병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기한 내 사전 변경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시작 시간 전까지 관할 지사 통화 후 변경신청

※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지원일자, 지원시간, 지원장소,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원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및 지원금 미지급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[별지6] '특이사항 발생시 조치 기준' 참조

- (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) 산업현장교수는 매월별로 월별지원실적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익월 7일까지 관할 공단 지부·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 지원 종료 후에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와 최종성과보고서 함께 제출
 - 지원 기간이 1개월 이내 등 단기에 종료되는 지원은 월별지원실적보고서 생략하고 익월 7일까지 최종성과보고서와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제출
 - 공단 관할 지부·지사에서 산업현장교수의 최종성과보고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, 산업현장교수는 공단이 지정한 기일까지 보완하여 보고서 수정 제출
- (모니터링 실시) 공단은 최종 승인된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지원사업이 실시되는지 관리·감독할 의무가 있으며, 불시에 현장 방문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
- (서류 보관) 지원기관과 산업현장교수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지원 활동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
- (정보 유출 방지)
 - 지원기관은 산업현장교수로부터 지원 받은 내용을 산업현장교수와 사전 협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
 - 산업현장교수는 지원사업 이행과정에서 공단과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협의 없이 판매, 복사, 발표,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

- (고객만족도 조사)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 적극 참여 협조
 - (자체 조사)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기관 담당자는 마이스터넷을 통하여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필수 참여 (온라인)
 - (공공기관 만족도 조사) 지원사업 관련하여 당해연도 12월 ~ 차년도 2월 중 지원기관 담당자 전화로 만족도 조사 실시

7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, 지원내용의 기재사항 착오,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기관과 산업현장교수의 귀책사유이며, 그에 따른 결과(미선정, 지원선정 취소 등)는 공단의 결정에 따름
- 지원 결정 후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 발생 시 지원결정 취소될 수 있음
- 지원기간 중 「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운영지침」에 따른 산업현장교수의 해촉 사유 발생 시 해당 지원사업 즉시 중단함

「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가고 단 운영지침」 제11조(해촉·위촉 배제)

위촉된 산업현장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당해 산업현장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현장교수에 위촉된 경우
2. 산업현장교수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
3.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
4.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지원시간에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원활동 위반사항이 경고 2회에 달하는 경우
5. 산업현장교수 본인이 활동 포기 요청을 한 경우(사망 포함)
6. 공단 내·외부 사업에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

- 지원기관이나 산업현장교수가 '6. 지원기관 선정(승인) 후 준수사항'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해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
- 공고된 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마이스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니, 마이스터넷 확인 바람
-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「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운영지침」 및 공단의 결정에 따름

[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 희망기관 상시 조사]

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참여희망기관을 상시 조사하고 있습니다.

지원희망 상시 조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기업은 지원 신청기간,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(지원희망 조사 신청방법) 마이스터넷(<https://meister.hrdkorea.or.kr>) – 단체회원 로그인
- 산업현장교수 – 산업현장교수지원 – 지원 희망 사전 조사 – 사전조사 신청서 작성

[별지1]

지원분야별 세부 직종

분야 (NCS 대분류 코드)	세부 직종 (NCS 중분류 코드)
1. 기계 (NCS 15)	기계가공[기계설계, 기계가공] (NCS 15_01, 02)
	생산·공정관리[기계조립·관리, 기계품질관리] (NCS 15_03, 04)
	냉동공조[기계장치설치] (NCS 15_05)
	차량 및 수송[자동차, 철도차량제작, 조선, 항공기제작] (NCS 15_06, 07, 08, 09)
	금형 (NCS 15_10)
	스마트공장 (NCS 15_11)
2. 재료 (NCS 16)	금속재료 (NCS 16_01)
	세라믹재료 (NCS 16_02)
3. 화학·바이오 (NCS 17)	화학·바이오공통, 석유·기초화학물 (NCS 17_01, 02)
	정밀화학, 바이오 (NCS 17_03, 05)
	플라스틱·고무 (NCS 17_04)
4. 섬유·의복 (NCS 18)	섬유제조 (NCS 18_01)
	패션 (NCS 18_02)
5. 전기·전자 (NCS 19)	전기 (NCS 19_01)
	전자[전자기기일반, 전자기기개발] (NCS 19_02, 03)
6. 정보통신 (NCS 20)	정보기술 (NCS 20_01)
	통신기술 (NCS 20_02)
	방송기술 (NCS 20_03)
7. 식품가공 (NCS 21)	식품가공 (NCS 21_01)
	제과·제빵·떡제조 (NCS 21_02)
8. 건설 (NCS 14)	토목[건설공사·관리, 토목] (NCS 14_01, 02)
	건축[건축, 조경, 도시·교통] (NCS 14_03, 05, 06)
	건설기계운전·정비 (NCS 14_07)
	플랜트[플랜트, 해양자원] (NCS 14_04, 08)
9. 디자인·문화콘텐츠 (NCS 08)	디자인 (NCS 08_02)
	문화콘텐츠 (NCS 08_03)
10. 이미용(NCS 12)	이미용 (NCS 12_01)
11. 음식서비스 (NCS 13)	음식조리[식음료조리·서비스 중 음식조리에 한함] (NCS 13_01_01) (중분류 NCS 13_01 중 소분류 01 음식조리만 해당)
12. 공예 (NCS 22)	공예 (NCS 22_02, NCS 24_01_04) (중분류 NCS 24_01 중 소분류 04 화훼장식 포함)
13. 산업안전 (NCS 23)	산업안전 (NCS 23_06)
14. 품질관리 (NCS 02)	품질관리[생산품질관리 중 품질관리에 한함] (NCS 02_04_02) (중분류 NCS 02_04 중 소분류 02 품질관리만 해당)

※ 경영·회계·사무, HRD는 품질관리분야로 지원

※ NCS 분류코드는 국가직무능력표준(<https://www.ncs.go.kr>) 분류에 따름

[별지2]

지부·지사별 관할구역 및 문의처

기관명	담당자 연락처	소재지
	관할 구역	
서울지역본부	02-2137-0411	(02512)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
	서울특별시 동대문구, 강북구, 광진구, 노원구, 도봉구, 성동구, 성북구, 중랑구	
서울서부지사	02-2024-1735	(03302) 서울 은평구 진관3로 36
	서울특별시 은평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중구, 종로구	
서울남부지사	02-6907-7175	(07225)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
	서울특별시 영등포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, 양천구	
서울강남지사	02-2161-9116	(06193)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 T412타워 15층
	서울특별시 강남구, 강동구, 서초구, 송파구	
강원지사	033-248-8504	(24408)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
	강원도 춘천시, 원주시, 영월군, 양구군, 인제군, 화천군, 홍천군, 횡성군, 경기도 가평군	
강원동부지사	033-650-5726	(25440)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
	강원도 강릉시, 동해시, 삼척시, 속초시, 태백시, 고성군, 양양군, 정선군, 평창군	
경인지역본부	031-249-1206	(16626)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-68
	경기도 수원시, 과천시, 군포시, 안양시, 의왕시, 화성시, 안산시	
인천지사	032-820-8611	(21634)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
	인천광역시	
경기북부지사	031-850-9112	(11801) 경기 의정부시 바대논길 21
	경기도 의정부시, 고양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파주시, 포천시, 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	
경기동부지사	031-750-6262	(13313)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
	경기도 성남시, 이천시, 여주시, 광주시, 하남시, 양평군	
경기남부지사	031-615-9042	(17561)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-23 2층, 3층
	경기도 안성시, 용인시, 오산시, 평택시	
경기서부지사	032-719-0807	(14488)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63번길 69
	경기도 부천시, 광명시, 김포시, 시흥시	
부산지역본부	051-330-1906	(46519)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
	부산광역시 북구, 강서구, 동구, 부산진구, 사상구, 사하구, 서구, 연제구, 중구, 경상남도 양산시, 김해시, 밀양시	
부산남부지사	051-620-1972	(48518) 부산 남구 신선로 454-18
	부산광역시 남구, 금정구, 동래구, 수영구, 영도구, 해운대구, 기장군	
경남지사	055-212-7217	(51519)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
	경상남도 창원시, 거제시, 통영시, 고성군, 의령군, 창녕군, 함안군	
울산지사	052-220-3244	(44538) 울산 중구 종가로 347
	울산광역시	

기관명	담당자 연락처	소재지
	관할 구역	
경남서부지사	055-791-0713	(52733)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
	경상남도 진주시, 사천시, 거창군, 남해군, 산청군, 하동군, 함양군, 합천군	
대구지역본부	053-580-2315	(42704)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
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경산시, 영천시, 고령군, 청도군	
경북지사	054-840-3025	(36616)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
	경상북도 안동시, 문경시, 상주시, 영주시, 봉화군, 영양군, 예천군, 의성군, 청송군	
경북동부지사	054-230-3231	(37580)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
	경상북도 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	
경북서부지사	054-713-3005	(39371)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, 2층
	경상북도 구미시, 김천시, 성주군, 칠곡군	
광주지역본부	062-970-1734	(61008)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
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나주시, 곡성군, 구례군, 담양군, 영광군, 장성군, 함평군, 화순군	
전북지사	063-210-9214	(54852)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
	전라북도 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순창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	
전남지사	061-720-8522	(57948)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-2
	전라남도 순천시, 광양시, 여수시, 고흥군, 보성군	
전남서부지사	061-288-3334	(58604)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
	전라남도 목포시, 강진군, 무안군, 신안군, 영암군, 완도군, 장흥군, 진도군, 해남군	
제주지사	064-729-0727	(63220)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
	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	
전북서부지사	063-731-5507	(54098)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97번지 풍산빌딩 2층
	전라북도 군산시, 김제시, 익산시, 고창군, 부안군	
대전지역본부	042-580-9115	(35000)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
	대전광역시, 충청남도 계룡시, 논산시, 보령시, 금산군, 부여군, 서천군, 청양군	
충북지사	043-279-9026	(28456)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
	충청북도 청주시, 괴산군, 보은군, 영동군, 옥천군, 진천군, 증평군	
충남지사	041-620-7618	(31081)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고1길 27
	충청남도 천안시, 서산시, 태안군, 아산시, 예산군, 당진시, 홍성군	
세종지사	044-410-8012	(3012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, 5층
	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	
충북북부지사	043-722-4316	(27502) 충북 충주시 호암수청2로 14, 4층
	충청북도 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	

[별지4]

직무수행계획서

지원분야 (직종)	()	산업현장교수	(서명)
지원신청기관		기관장	(직인)
지원 장소		담당자	
		이메일(E-mail)	
총 지원기간	총 지원시간	1일당 지원시간	
월 일~ 월 일	○○○시간	일당○시간(00:00~00:00) (식사시간 : 00:00~00:00)	

※ 지원금액 산정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내용 및 성과목표

요구 및 지원내용(세부항목별 구분)

연번	지원 요청사항	지원내용	최종성과목표	일정
1		기업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내용 작성		
2		<양식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>		
3				
4				

일시별 지원 세부 계획 (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)

지원일시	세부내용	방법	비고
00월00일(요일) 00:00~00:00	일자별 지원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		
	<양식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>		

기대효과(예상) :

위와 같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2024년 월 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○○지부·지사장 귀하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□ 목적

-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 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활용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-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및 창·휴·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□ 동의 효력기간

-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
 - 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-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
 - 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※ 본 동의 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기업명

대표자

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특이사항 발생시 조치 기준

1. 산업현장교수 조치 기준

조치내용	조치 기준
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각, 외출, 조기종료 등으로 계획된 지원시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(1일 지원시간의 20%이하 미실시) ○ 사전 계획변경 신고 없이 직무수행계획서의 지원시간을 임의 변경한 경우
경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 계획변경 신고 없이 지원을 미실시한 경우(1일 지원시간의 20%초과 미실시) ○ 지원시간에 참여했으나 실제 지원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수행계획서 상 수행내용과 실제 지원내용이 지원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 ○ 지원날짜, 지원시간, 지원내용 등 지원계획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보고한 경우 ○ 제25조제7항에 따른 보고서를 활동한 연도의 12월 두번째 금요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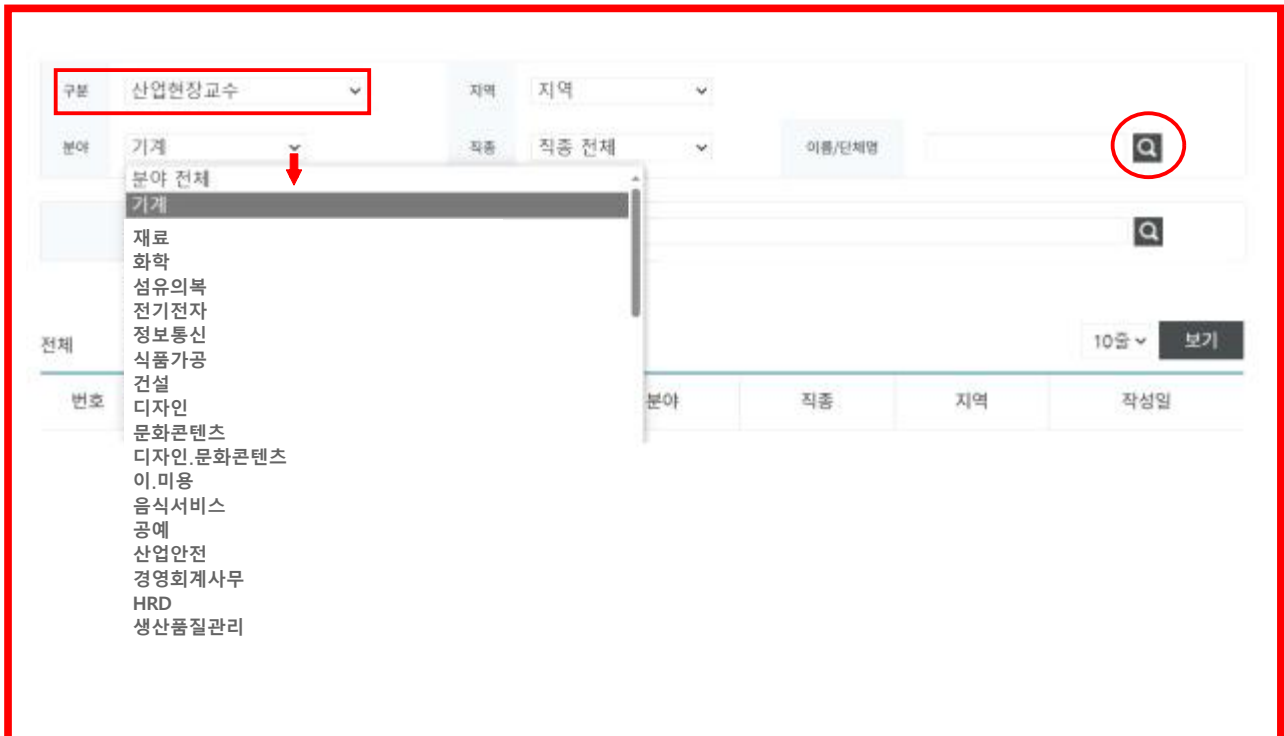
2. 지원기관 조치 기준

조치내용	조치 기준
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기관 또는 전수대상자 귀책사유로 1일 지원시간의 20%이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○ 사전 계획변경 신고 없이 직무수행계획서의 지원시간을 임의 변경한 경우
경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기관 또는 전수대상자 귀책사유로 1일 지원시간의 20%초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○ 사전 계획변경 신고 없이 지원신청기관 임의로 지원날짜, 지원장소를 변경하는 경우

[별지7]

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검색 방법

1. 마이스터넷 홈페이지 하단의 「숙련기술인 정보」에서 **+** 버튼, 또는 이름 검색을 통해 「숙련기술인 검색」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2. 구분을 '산업현장교수'로 선택한 후 분야를 선택합니다.
3. 이름/단체명을 쓰지 않은 채로 **Q** 모양을 클릭하여 검색합니다.



[별지8] 지원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.

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 신청서

신청인	부서		연락처	전화	
	직위			휴대폰	
	성명			FAX	
				E-mail	
사업장개요	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자등록번호		
	사업체명		대표자		
	업종		상시근로자수	명	
	연 매출액		생산제품		
	소재지				
지원신청 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계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료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화학·바이오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섬유·의복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·전자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보통신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식품가공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·문화콘텐츠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이·미용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음식서비스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예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안전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품질관리분야				
지원목적 및 세부 요청사항					
지원대상자 전수시간 할애 계획					
달성목표					
예상기대효과					
희망 산업현장교수		지원희망 일자			
지원대상자	○○○ ○○○ (이름기재)		지원 장소		
<p>위와 같이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을 신청하며,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, 지원사업 취소·중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지원신청기관 대표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</p>					

- 첨부서류
1.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.
 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 3.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.
 4. 지원장소 확인서 1부. (해당 기관만 제출)
 5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.